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4. 1. 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KEIT"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KEIT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KEIT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합니다.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4. 차량출입확인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 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3. "차량번호판사진"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사진으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 합니다.

제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KEIT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본동	41대	현관, 비상계단, 복도, 지하입구 등
청사외곽 (조경)	2대	조경시설 방향
청사외곽 (주차장)	8대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출입구	4대	자동차번호판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안전환경상생협력실이며,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승희 실장	053-718-8550
접근권한자	안전환경상생협력실	이현우 책임	053-718-8328

제5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 정보	24시간 촬영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방재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자동 파기

제6조(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차량번호판사진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자동차등록번호 사진정보	24시간 촬영	3년*	방재실	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요청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파기

* 정부청사 차량출입 정보 보유기간 3년과 동일하게 설정(정부청사관리본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제7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확인장소 : KEIT 방재실

2. 연 락 처 : 053-718-8995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

제8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KEIT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한합니다.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붙임 제1호 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로 신청 하여야 합니다.
3. KEIT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KEIT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KEIT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붙임 제2호 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의 목적
 - *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호에 의하여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KEIT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합니다.

제9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KEIT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2.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또는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파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개인영상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3. 차량번호판사진의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년 보관 후 삭제

제11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파기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기일시(자동삭제의 경우 제외)
3.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파기담당자

그 외, 보존기간을 초과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는 원내 개인정보 파기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제12조(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수집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보호)

KEIT는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붙임1 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바로보기 바로보기 🔍
[붙임2 서식]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관리대장	다운로드 다운로드 ↓	바로보기 바로보기 🔍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1월 31일에 적용되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게시판 공지일자 : 2024년 1월 31일 / 시행일자 : 2024년 1월 31일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력은 [\[이력 보기\]](#) [\[이력보기 <클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input type="checkbox"/> 존재확인 <input type="checkbox"/>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3.01.01 18:30 ~ 2023.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KEIT 주차장 CCTV 1호기)
	청구 목적 및 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p>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영상/차량번호판사진 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정보주체가 아닌제3자에게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영상정보를 주는 경우
(출력물 또는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등 포함)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 일시 : 신청 받은 일시기재(예: '21.00.00 14:00 등)
-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
(예: '21.00.00일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등)
-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예: OO과 OO직급 홍길동)
-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 이용 제공받는 제3자/열람등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 OO경찰서OO계OO직급 박길동 02-123-4567)
- 이용 제공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CD, USB), 기타(OO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예: 이용기간'21.00.00~00.0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예: 파기예정'21.00.0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를 기재(예: 30일 주기 자동파기, 매월 1일 확인)
-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21.00.0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1.00.0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1.00.00)
 - 자료반환 : 자료반환('21.00.00)받은 후 파기함('21.00.00,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제거 후 제공('21.00.00)"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